

『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
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6월 12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6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6월 21일

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이 성 칠

나. 제안이유

-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외 8건의 일본식 한자어 사용 조례 개정
 - 불입 → 납입
 - 지참 → 지각
 - 납골당 → 봉안당
 - 부락 → 마을

- 구좌 → 계좌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
-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장 근

- 본 『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수정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